

제425회 임시회

'25. 4. 22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정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도지사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,
-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의 조 번호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조 번호를 변경함.
(안 제6조, 제25조)
-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보고와 관련해 “지체없이”를 삭제함. (안 제19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

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 인용 법령의 조 번호를 변경하고, 지방 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조례를 정비할 하려는 것임.

- 특히, 현행 조례 제19조의 "지체없이"라는 표현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사전 보고의 의미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방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법령 인용 조항의 조번호 변경 (안 제6조, 제25조)

- 안 제6조제1항제4호는 신고포상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,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으로 조 번호가 "제25조"에서 "제36조의3"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.
- 안 제25조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조항 역시 상위법 개정으로 "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"에서 "법 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"로 변경된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것임.
-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 및 통일성 측면에서 필요하고 타당함.

○ 지방보조사업 보고 관련 사항 개정 (안 제19조)

- 현행 제19조는, 용어 사용에 있어 조 제목에는 "신고"로 되어 있는 반면, 조문에는 "보고"를 사용하고 있음. 물론 행정상 두 용어의 의미는 동일하게 사용되지만, 현행 조례 제6조에 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, 도민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19조의 조 제목 중 "신고"를 "보고"로 변경함.

□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6조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4.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

※ 신고포상금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련 신고 또는 고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지방보조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본 조례안은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음. 다만, 법 제14조에 따른 경미한 내용의 변동 범위 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.